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부서)의 장
람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19-15호
2019. 2. 22.(금)

차 례

고 시(2)

-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고시(고시 제2019-24호) ···1
- 도로명주소 부여·변경 고시(고시 제2019-25호) ·····8

공 고(4)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공고 제2019-172호) ·····9
-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19-180호) ··10
- 공인 등록 공고(공고 제2019-181호) ·····12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사실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19-184호) ·····13

입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19-185호) ·····14

공 람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19-24호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고시

2019. 2. 20.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 영 규 약

제정 : 2016년 12월 15일

1차 개정 : 2019년 1월 19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치단체장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기구로서의 협의회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회장 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시행한다.

1.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 추진
2. 국가에너지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3.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4.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및 홍보실시
5. 국가의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간 연대 활동
6.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 장 회 원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별표” 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된다.

② 위원은 취임과 동시에 회원이 되며 퇴임과 동시에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협의회 회칙을 준수하고 협의회의 활동에 협력 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개진하거나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부단체장이나 업무담당 간부가 대리할 수 있다.

④ 회원은 부담금을 소속 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 협의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7조(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고문, 부회장, 감사 및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총장을 둔다.

② 회장은 회의에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지명한다.
2. 회장은 위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③ 고문은 광역시의 단체장으로 하며 협의회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

⑤ 감사는 협의회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년 1회 정기회의 시 보고하고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

⑥ 사무총장은 협의회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회장과 협의하여 사무처 운영 및 직원을 관장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삭제 <2019. 1. 19.>

제 4 장 회 의

제9조(회의 및 의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 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5 장 사무국

제13조(사무국 설치)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이 있는 회원도시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총장이 있는 자치단체의 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

③ 필요시 사무국에 에너지 관련 학식과 경륜을 가진 전문위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회장이 임면한다.

제13조의1(사무의 위탁운영 및 관리) ① 협의회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사무의 위탁범위, 위탁기간 등 그 밖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과의 위·수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사무의 위탁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 19.]

제 6 장 자 문

제14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 7 장 재 정

제15조(재원) ① 협의회의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연 회비
   가. 인구 50만 명 초과 : 7,000,000원
   나.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이하 : 5,000,000원
   다. 인구 30만 명 미만 : 3,000,000원
2. 특별회비 <개정 2019. 1. 19.>
3. 기타수입, 적립금 이자

제16조(관리) ① 회비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회비는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비는 필요한 경우 정기 회의에서 협의·결정한다.

④ 회계연도는 매년 1. 1. ~ 같은 해 12. 31.까지로 한다.

⑤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17조(제 규정) 그 밖에 협의회 조직 및 운영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이 규약은 창립총회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임기) 제8조에도 불구하고 최초 임원은 다음연도 첫 번째 정기총회까지를 임기로 한다.

[별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2기 : 2019. 1. 19. ~

지 역	지 자 체 명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본청(고문),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금천구, 강동구, 성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광명시, 이천시, 오산시, 의왕시, 광주시, 여주시
충청남도	충청남도 본청(고문),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전라북도	전주시
강원도	춘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19-25호

도로명주소 부여·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2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 여 사 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 고
오정동 342-1	오정로51번길 53	2019. 2. 22.	건물신축	오정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5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송촌동 293-24	송촌남로56번길 51	2019. 2. 22.	건물신축	송촌남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5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덕암동 19-15	덕암로249번길 5	2019. 2. 22.	건물신축	덕암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2,4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도로명주소 변경

지 번 주 소	변경 전 도 로 명 주 소	변경 후 도 로 명 주 소	변경 고시일	도로명주소 변 경 사 유	비 고
덕암동 21-18	덕암북로22번길 89-9	덕암북로22번길 89-7	2019. 2. 22.	토지이동(분할)에 따른 지번생성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172호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249-2번지 상 건축물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아 래

1. 공고하는 사항

구 분	위 치	도 로 구 분			소유자
		면 적	너 비	길 이	
건축법상 도로지정	신탄진동 249-2	13㎡	4m	9m	박성원

2. 기 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153)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180호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한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9. 2. 22. ~ 3. 8.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3. 당 사 자
   - 상 호 명 : 미니스톱 신탄진타운점
   - 성 명 : 이○○ 외 1명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233번길 1, 1층(덕암동)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7. 청문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19. 3. 12.(화) 14:00
   - 장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별관2층 에너지경제과
   - 청문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 지 참 물 : 신분증, 도장
   - 의견제출기한 : 2019. 3. 8.(금) 18:00까지
8.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의거 예고된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에너지경제과(☎042-608-64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 2019-181호

공인 등록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공인 등록일자 : 2019. 2. 22.(금)
2. 공인 등록내역 : 1개

연번	구 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변경일자	사 유
1	공인등록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저 소 득 주 민 자 녀 장 학 기 금 출 납 원 인	훈민정음체 / 1.8cm 정방형		2019.2.22.	신규등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184호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사실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제4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한 행정처분(영업소폐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사실 공시송달 공고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제4항,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4. 공시송달 내역

업종	업소명	업소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처분일자)	비고
유통전문판매업	삼정코리아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로23번길 63, 3층(비래동)	최철규	영업소 시설물 전부 철거	영업소 폐쇄 (2019.2.1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대전한밭수산중도매인 1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987(오정동, 외46필지 수산2동, 1층)	조문옥	영업소 시설물 전부 철거	영업소 폐쇄 (2019.2.12.)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퓨처라이프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64(오정동, 지하1층)	지현희	영업소 시설물 전부 철거	영업소 폐쇄 (2019.2.12.)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샤론엠파이어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201, 402호(중리동)	김병화	영업소 시설물 전부 철거	영업소 폐쇄 (2019.2.12.)	

5. 공고기간 : 2019. 2. 22.~ 3. 9.(15일간)
6. 고지사항 : 위 행정처분(영업소폐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등은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대덕구청 위생과 ☎(042)608-6964.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 2019-18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일자리창출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나.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새로운대덕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새로운대덕추진단
(전화 : 042-608-6141, FAX : 042-608-3813, E-mail : kwon700@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로운대덕추진단 담당자 권경숙(전화 : 042-608-61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일자리창출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복지국장과 기획홍보실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학계·경제계·시민단체 등 고용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창업·정책활동 등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일자리창출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복지국장과 기획홍보실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학계·경제계·시민단체 등

	고용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창업·정책활동 등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신 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11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6조 ~ 제9조 (생 략)	제12조 ~ 제15조 (현행 제6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새로운대덕추진단	
담 당 자 연 락 처	권 경 숙 042-608-6141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